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14P
----------	-------

제출년월일 : 2003. 7. 9.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 1. 12 전문개정되어 2001.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준을 준용함(안 제8조)
-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둘 수 있는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허용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동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 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법률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경기도묘지등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제1항 별표3에서 납골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분묘를 개장하여 제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고,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이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주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2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자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주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국가유공자묘지는 파주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이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 ②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무연고 행어사망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설묘지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

(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허가권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인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이 평 자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이 용재
	담당자 성명·전화	송 화 식 (442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1. 공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교하읍 공설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16-4	
월릉면 공설묘지	월릉면 덕은리 산203-8	
탄현면 공설묘지	탄현면 금송리 산22	
파평면 공설묘지	파평면 읍곡리 산5-3	
통일촌 공설묘지	군내면 백언리 산27	

2. 공동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선유리 공동묘지	문산읍 선유리 산16	
사목리 공동묘지	문산읍 사목리 산18-1, -3	
마정리 공동묘지	문산읍 마정리 산16-1	
이천리 공동묘지	문산읍 이천리 산110-1, -6	
파주리 공동묘지	파주읍 파주리 산43-1	
부곡리 제1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1-2	
부곡리 제2공동묘지	파주읍 부곡리 산26	
봉암리 공동묘지	파주읍 봉암리 산76, -1	
향양리 공동묘지	파주읍 향양리 산47-2	
직천리 공동묘지	법원읍 직천리 산60	
오현리 공동묘지	법원읍 오현리 산79-1	
대능리 공동묘지	법원읍 대능리 산18	

명 칭	위 치	비 고
동문리 공동묘지	법원읍 동문리 산137	
웅담리 공동묘지	법원읍 웅담리 산40-1	
교하리 공동묘지	교하읍 교하리 산51	
하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하지석리 산66	
상지석리 공동묘지	교하읍 상지석리 산141-1	
야당리 공동묘지	교하읍 야당리 산18-1, 산19	
동패리 제1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167	
동패리 제2공동묘지	교하읍 동패리 산237-1	
신촌리 공동묘지	교하읍 신촌리 산50	
오도리 공동묘지	교하읍 오도리 산49	
장곡리 공동묘지	조리읍 장곡리 산45-1, -3	
금산리 공동묘지	탄현면 금산리 산17, -1	
범흥리 공동묘지	탄현면 범흥리 산142	
갈현리 공동묘지	탄현면 갈현리 산20	
문지리 공동묘지	탄현면 문지리 산22, 산22-1	
신산리 공동묘지	광탄면 신산리 산2	
늘노리 공동묘지	파평면 늘노리 산8	
율포리 공동묘지	적성면 율포리 산5-1, -2	
구읍리 공동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두지리 공동묘지	적성면 두지리 산33, -1	
장좌리 공동묘지	적성면 장좌리 산104	

3. 국가유공자묘지

명 칭	위 치	비 고
파주시국가유공자묘지	적성면 구읍리 산38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1. 공원묘지 단위 : 원

1기당 면적	사용허가신청시 납부금액			사용자 부담액				비고
	개	사용료	관리비	개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	245,000	95,000	150,000	※ 시행규칙으로 정함				

※ 초과 사용시 사용료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

2. 공동묘지 단위 : 원

1기당 면적	사용허가신청시 납부금액			사용자 부담액				비고
	개	사용료	관리비	개	매장료	비석대	잔디료	
6.6㎡	10,000	10,000	-	※ 시행규칙으로 정함				

※ 초과 사용시 사용료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한다.